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228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아든자산운용

2. 조치내용

□ ㈜아든자산운용에 과태료 62.4백만원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(1)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

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,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,

○ ㈜아든자산운용은 ㈎펀드가 소유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 O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구체적인 사유를 총 2회(2022년, 2023년)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(2)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의무 위반

□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(선임·해임)하는 경우 임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,

○ ㈜아든자산운용은 20xx.xx.xx., 20xx.xx.xx.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(총 2회 미보고)

나. 근거법규

(1)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
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87조 제8항
□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제91조 제1항, 제2항

(2)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의무 위반

□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30조 제2항
□「지배구조법 시행령」제25조 제1항, 제2항
□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」제14조 제1항, 제2항
□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」제6조